

부산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가단3335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호택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5. 14.

판 결 선 고 2024. 6. 18.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2023.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23. 3. 14. 접수 제130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2021. 3. 19. C은행 대출금에 대한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소외회사가 C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원고가 2023. 6. 30. 그 보증금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런데, 소외회사는 2023. 3. 10.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4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회사에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그런데, 소외회사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근저당채무까지 인수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방식으로 매수할 당시 소외회사는 어떠한 금융제제나 사업행위를 하는데 대한 제한요소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전인 2021. 3. 19.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얼마 후인 2023. 6. 30.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방식으로 매수할 당시 소외회사가 어떠한 금융제제나 사업행위를 하는데 제한요소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나. 한편,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비록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자체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이영갑

별지